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2. 8. 9.>

## **과태료의 부과기준**(제40조 관련)

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3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
  - 4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  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대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 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아동·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 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)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대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삭제 <2020. 12. 29.>				
나.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·청소년대상 성 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 67조 제4항	300	300	300
다.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 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·치료프로그 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 우	법 제 67조 제2항 제1호	300	600	1,000
라.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 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 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	법 제 67조 제3항	300	400	500
마.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 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 는 경우	법 제 67조 제2항 제2호	600	800	1,000